

2004. 12. 24(금) 10:00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조 례 심 사 보 고 서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5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4. 12. 13.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13.

다. 상정일자 : 2004. 12. 20.

(제115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라. 의안번호 : 제 2004 - 62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2004.1.29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7.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존의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를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기존의 공중화장실외에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정의함(안 제2조)

○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관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군수는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경우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 13조)

○ 군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14, 15조)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6, 17조)

○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던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과 예산지원근거, 과태료처분근거 등이 마련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7.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표준조례안의 근거에 의거 기존조례의 명칭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동 조례의 내용 중 일부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위반 시 과태료부과를 당하는 등 처분조항이 있으나, 이는 대다수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법률의 근거에 의한 것이며,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2004.11.6 신문등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내용·절차 등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액은 100만원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관련사항 위반 시 최하 5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하되 최근 1년간 위반횟수를 감안 부과토록 설정한 것은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현재 관내 공중화장실로 운영중인 곳은 61개소(간이16, 발효식20, 수거식 22, 수세식3)이며, 개방화장실과 유료화장실로 지정된 사항은 없음.

4.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던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과 예산지원근거, 과태료처분근거 등이 마련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7.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표준조례안의 근거에 의거 기존조례의 명칭과 조문을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 략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4. 12. 13.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13.

다. 상정일자 : 2004. 12. 21.

(제115회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라. 의안번호 : 제 2004 - 63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2004.3.11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기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로 함(안 제2조 1호)

○ 법정 정립액의 100분의 30이상금액과 나머지 금액 및 발생이자는 별도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장기예치금액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하도록 함(안 제4, 5조)

○ 기금의 사용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목적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록 용도를 제한함(안 제6조)

○ 재난위험지역 또는 재난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게는 임대주택 실소요 이주지원비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총 소요금액의 70%의 이하의 임차비용을 용자토록 함.(안 제7조)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함.(안 제10조)

○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 종전의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와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던 기금은 동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규정함.(부칙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각각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2004.3.11 통합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통합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종전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 종전 기금운용과 관련한 결정등을 재난관리기금에서는 “거창군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재해대책기금은 “거창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실·과장을 위원으로 15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군조정위원회 구성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재난위험지역 또는 재난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게는 이주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을 실소요 이주지원비 지급과 3천만원 한도내에서 총 소요금액의 70%의 이하의 임차비용을 융자토록 변경한 것은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거창군의 전세금의 규모를 볼때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각각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2004.3.11 통합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통합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 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 략